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

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중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4호”로 한다.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조치

2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제15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24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50”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48”을 “2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3”을 “23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0”을 “79”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1”로 하며, 고위 공무원단 “1”을 “2”로, 3급 또는 4급 이하 “61”을 “6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별표 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 관련)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4
일반직 계	34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33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정책국) ①·② (생략)	제12조(금융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2. <u>재정경제부</u> ----- ----- -----
3. ~ 42. (생략)	3. ~ 42.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융산업국) ①·② (생략)	제13조(금융산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2.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u>
<u><신 설></u>	23.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조치</u>
<u><신 설></u>	24. <u>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u>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신설>	25. ----- 제24호----- ----- ----- ----- 제15조(직무)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관리·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제16조(원장) ① ----- -----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5명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신 설>

----- 4명 -----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

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

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둔다.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

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
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
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
7.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
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
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
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
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
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
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④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삭 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정책의 기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
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
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
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
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

<삭 제>

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에 둔다.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0</u>	<u>264</u>	+14
·	·	·	
·	·	·	
일반직 계	<u>248</u>	<u>262</u>	+1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3</u>	<u>237</u>	+14
·	·	·	
·	·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0</u>	<u>79</u>	+9
일반직 계	<u>62</u>	<u>71</u>	+9
고위공무원단	<u>1</u>	<u>2</u>	+1
3급 또는 4급 이하	<u>61</u>	<u>69</u>	+8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